

충청북도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발의 연월일 : 2006. 1. 20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의원정수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 지방의료원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교육사회위원회는 6인을 7인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6인을 7인으로, 관광건설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함(안 제2조)
-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일부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취 : 별 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8인
2. 기획행정위원회 8인
3. 교육사회위원회 7인
4. 산업경제위원회 7인
5. 관광건설위원회 8인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중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3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p>
<p>제2조(상임위원회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 7인</p> <p>3. 교육사회위원회 6인</p> <p>4. 산업경제위원회 6인</p> <p>5. 관광건설위원회 7인</p>	<p>제2조(상임위원회설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 8인</p> <p>3. 교육사회위원회 7인</p> <p>4. 산업경제위원회 7인</p> <p>5. 관광건설위원회 8인</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 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p> <p>3. 교육사회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신설)</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 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생략)</p>	<p>제12조의 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회의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회의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인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회의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 ④ (생략)